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21호 2018. 6. 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6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52호 삼척시 금고지정 제안 재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45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6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 - 67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06. 0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04 외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6. 0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
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08-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04	20180601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증봉리 252-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증봉당골길 545	2018060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지형지물(당골) 복합활용	
3		이	하	여	백		
4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비고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208-9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04	20180601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증봉리 252-2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증봉당골길 545	20180601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지형지물(당골) 복합활용
계		2건					

삼척시 공고 제2018 - 452호

삼척시 금고지정 제안 재공고

삼척시 금고 약정기간이 2018.12.31. 만료됨에 따라 『삼척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금고 지정계획을 공고(삼척시 공고 제2018-378호)하였으나 제안서 접수결과 1개 금융기관만 제출되었기에 삼척시 금고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삼척시장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금고의 수 : 단수금고(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3. 약정기간 : 4년(2019. 1. 1 ~ 2022. 12. 31)
4. 금고의 주요업무
 - 지방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 유가증권(수입증지 등)의 출납 및 보관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5. 신청자격 :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은행법」 제2조 및 제4조의 금융기관으로 관내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신청절차

- 관계서류 열람
 - 기 간 : 2018. 5. 31(목) 09:00~18:00
 - 열람서류 : 전년도 세입예산서, 세출결산서 및 관련서류 등
 - 장 소 : 삼척시 세무과 세입관리부서 (본관 1층)
- 금고지정 신청(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8. 6. 1 ~ 6. 8 ※ 단, 근무시간내(09:00~18:00)
 - 접수장소 : 삼척시 세무과 세입관리부서(본관 1층)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삼척시 금고지정 신청서 1부.
 - 삼척시 금고지정 제안서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삼척시 금고지정 제안요약서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사용인감확인서 1부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법인정관 1부
 - 각서 1부

7.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별첨

8. 심사·평가방법

- 「삼척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심사
- 삼척시 금고를 운영·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제출된 제안서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서류 심사
- 「삼척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확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에 보완서류 제출 및 관계자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은 대표성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금융기관의 책임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 신청(제안)서는 「삼척시 금고지정 신청안내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접수마감 후, 추가 및 보완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함
- 이외 세부사항 등은 금고지정 신청 사전 설명회의 “삼척시 금고지정 신청 안내서”에 따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세무과 세입관리부서(☎ 033-570-37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3조제2항 관련)

I. 총괄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6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 자본비율 (안정성, 7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7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7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6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32 (10) (22)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17 (6) (5) (4) (2)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리성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21 (5) (9) (7)	
4. 금고업무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금고업무 조직,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1 (5) (7) (7)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시와의 협력사업' 평가는 자체 평가 기준에 따라 운영하되, 평가기준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마련	9 (5) (4)	

II.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i. 일반원칙

-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 다.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에 있어,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가,나,다)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2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10점)

1) 국외 평가기관 (6점)

- 대표적 국제 신용조사기관인 무디스(Moody's), 에스앤피(S&P), 피치(FITCH)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사기관의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	등급별 배점				비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6.0점	6.0점	5.4점	4.8점	4.2점	

2) 국내 평가기관 (4점)

- 대표적 국내 신용조사기관인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중 해당 금융기관이 제출한 평가서의 등급기준에 따라 평가

배점	등급별 배점				비고
	최고등급	상위등급	보통등급	요주위등급	
4.0점	4.0점	3.6점	3.2점	2.8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10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22점)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공시자료에 따라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자료와 비교·확인(배점등급은 금융감독원 일반은행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적용)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자치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1) 총 자본비율(안정성, 7점)

배 점	비율별 배 점				비고
	8%이상	6%이상~8%미만	4%이상~6%미만	4%미만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2)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7점)

배 점	비율별 배 점				비 고
	2.5%이하	2.5%초과~4.0%이하	4.0%초과~7.0%이하	7.0%초과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3)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6점)

배점	비율별 배점					비고
	20%이상	16%이상~20%미만	12%이상~16%미만	8%이상~12%미만	8% 미만	
6.0점	6.0점	5.4점	4.8점	4.2점	3.6점	

4)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유동성, 2점)

배점	비율별 배점					비고
	100%이상	90%이상~100%미만	80%이상~90%미만	70%이상~80%미만	70%미만	
2.0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7점)

- 금융기관이 제안한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에 따라 예금종류 및 기간별로 별도 배점하여 평균함
-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비교하여 순위별로 배점
- 가장 높은 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하며 제안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 대출금리의 경우 각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금리를 기간별(1년 이하, 1년 초과)로 비교하여 합한 점수를 순위별로 배점하되, 가장 낮은 대출금리가 1순위이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처리하며 제안 금리가 동일한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배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6점)

배점	순위별 배점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0점	6.0점	5.7점	5.4점	5.1점	4.8점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

배점	순위별 배점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75점	4.50점	4.25점	4.0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배점	순위별 배점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2점)

배점	순위별 배점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점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21점)

-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비교·평가 후 배점

가. 관내 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5점)

-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제안(공고)일 현재 삼척시 관내 점포수(통합전산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일 점포로 인정)를 비교·평가하여 배점

배점	순위별 배점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지방 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9점)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포함한 전년도(전년도 수납처리실적이 없는 금융기관은 최근 4년 중 최근년도에 가장 가까운 1년도 처리실적) 삼척시 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실적에 따라 배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9.0점	9.0점	8.1점	7.2점	6.3점	5.4점	

다. 지방 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배 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1점)

- 금고관리능력을 금융기관이 제출한 실적 및 계획서와 세입부서의 증빙자료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후 배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5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Cash-flow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7점)

- 최근 3년 전부터 제안(공고)일 현재까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수납·지출대행점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제안서 검토)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7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제안서 검토)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7.0점	7.0점	6.3점	5.6점	4.9점	4.2점	

라. 금고업무 전담조직 운영계획,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2점)

- 금고업무 전담 조직 운영계획을 금융기관별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배점하며 5순위 이하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점 처리
- 인력배치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제안서 검토)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점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9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시와의 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는지를 금융기관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계획서를 비교평가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5점)

○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재해구호활동, 인재육성 및 장학사업, 문화관광스포츠, 의료사업, 사회복지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여한 실적을 비교 평가한 후 배점(제안서 검토)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5.0점	5.0점	4.75점	4.50점	4.25점	4.0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4점)

○ 금융기관이 금고 약정기간 중 추진할 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투자금액에 따라 비교 평가한 후 배점(제안서 검토)

배점	순 위 별 배 점 표					비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4.0점	4.0점	3.8점	3.6점	3.4점	3.2점	

6. 위에서 정한 각 항목별 배점의 범위 안에서 세세항목 및 배점기준, 착안 사항 등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삼척시 공고 제2018-45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소유자의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18.5.29) 되어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18.05.29. ~ 2018.06.12. (15일간)
3. 말소일자 : 2018.05.29.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홍숙○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17-16	
	벽돌조(1층:41.31㎡ 단독주택, 2층:41.31㎡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05. 29.

삼척시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처분의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